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
----------	----

제출일자: 1999. 12. 24

제 출 자 : 사천시장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고 같은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대규모 사업장 등의 보건교육실시 의무 완화와 같은법 제9조제3항의 삭제 및 같은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별표 1)

3. 법적근거

-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제34조, 제35조
- 나.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999. 12. 2 ~ 12. 21(20일간)
- 나. 예고방법 : 신문광고
- 다. 접수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근거법령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제1항 <u>내지</u> <u>제3항</u>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0	30	50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 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	20	30	50
	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u>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u>	10	20	3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후)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근거법령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제1항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0	60	100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 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40	60	100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60	1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